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. 10. 20 선고 2019가합1503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중혁

피고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운, 서수현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영규

변론 종결2022. 7. 21.

판결 선고2022. 10. 2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선택적으로, C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2015. 6. 25.자 증여계약을 560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5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, 또는, 피고는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5. 6. 30. 접수 제26464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. 1. 19. 회생개시결정(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81호)을 받아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가 피고를 소송 수계하였다가, 위 회생절차에서 2021. 9. 14. 회생폐지결정이 이루어져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.

나. 원고는 2006. 1. 28.부터 2013. 9. 8.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와 C의 남편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총 710,000,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고, 2017. 11.경까지 위 대여금 중 150,000,000원을 변제받았다.

다. 원고는 2017. 11. 23. C와 E에게 위 대여금 중 나머지 560,000,000원을 2017. 12. 29.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다. C와 E가 위 날짜 이후에도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위 두 사람을 상대로 위 대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, 2020. 7. 8. 법원으로부터 C와 E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(수원고등법원 2019나20432호, 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 한다)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라. C는 2015. 6. 30. 피고에게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같은 달 25.자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제16호증,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한다.

가.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

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게 5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,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C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. 또한 피고는 C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회사이고 C가 사업상 별다른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에 비추어,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보유한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인 560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,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5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.

나.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

C는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C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.

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.

3. 판단

가.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 관한 판단

1)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 원금 5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(이하 '이 사건 대여금 채권'이라 한다)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)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(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다23207 판결,

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).

나) 앞서 든 증거들, 갑 제14, 15, 24, 37호증의 각 기재(각 가지번호 포함),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,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,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(1) 이 사건 증여계약이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,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.

(2)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총 895,819,200원¹⁾으로 평가되었다.

(3) 이 사건 증여계약일 무렵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제1부동산'이라 한다)에는 채무자를 피고,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총 6건의 근저당권²⁾ 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이 설정되었는데,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총 3,311,735,100원이다.

또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제2부동산'이라 한다)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고, 그 외에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8. 6. 23.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, 채무자 피고,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다.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제3부동산'이라 한다)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고, 그 외에 제3부동산에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없다.

1	2006. 4. 10.	1,000,000,000원	피고	중소기업은행
2	2008. 2. 19.	73,000,000엔(이 사건 변론종결일 매매기준율 950.87원/100엔 적용 시 694,135,100원)		
3	2009. 8. 11.	100,000,000원		
4	2011. 3. 7.	200,000,000원		

1	2006. 4. 10.	1,000,000,000원	피고	중소기업은행
5	2011. 12. 6.	612,000,000원	중소기업진흥공단	
6	2013. 7. 11.	705,600,000원		
합계	3,311,735,100원			

(4) 이 사건 증여계약일 기준 피고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채무 잔액이 4,554,977,014원이고, 중소벤처진흥공단의 대출금 채무 잔액은 584,000,000원인 점에 비추어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통상적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피담보채권액의 120% 상당으로 설정하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액은 2,759,779,250원³⁾ 상당으로 보인다.

(5)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안성시 G 공장용지 2,319m²(이하 'G 토지'라고 한다)와 안성시 H, G, I 지상 연면적 471.41m²의 2층 공장건물(이하 'J동'이라 한다) 및 피고가 보유한 공장 내 기계·기구들(이하 '이 사건 기계·기구'라고 한다)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.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(대법원 2013. 7. 18. 선고 2012다5643 판결 참조),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G 토지, J동 및 이 사건 기계·기구의 가액에 관하여 살펴본다.

① G 토지는 제1, 2부동산과 인접하여 있고 그 용도가 공장용지로 동일하므로, 단위면적당 단가 역시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제1, 2부동산의 단위면적당 단가(346,000원/m²)에 G 토지의 면적(2,319m²)을 곱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면, G 토지의 가액은 약 802,374,000원으로 추정된다.

② J동 역시 제3부동산과 인접해 있고 그 용도가 공장건물로서 동일하여 단위면적당 단가가 동일할 것으로 보이므로, 제3부동산의 단위면적당 단가(240,000원/m²)에 J동의 연면적(471.41m²)을 곱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면, J동의 가액은 약 113,138,400원으로 추정된다.

③ 이 사건 기계·기구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K 경매사건에서 그 가액이 372,963,000원으로

평가되었다.

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비율은 약 41%⁴⁾ 이므로, 위 비율로 앞서 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약 1,131,835,989원⁵⁾ 으로 추정된다.

즉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동담보물의 가액 비율대로 안분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(약 1,131,835,989원)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(895,819,200원)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.

나.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

1)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가)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,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(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8다17909 판결 참조).

나)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C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다)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다만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경위, 소송 진행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.

재판장판사류연중

판사박효송

판사하지인

별지

346,000원/m²) +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241,879,200원(= 연면적 1,007.83m² × 단위면적당 단가 240,000원/m²)

2) 2015. 6. 25.경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

3)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3,311,735,100원 ÷ 120% = 2,759,779,250원

4) 895,819,200원 ÷ (895,819,200원 + 802,374,000원 + 113,138,400원 + 372,963,000원)
= 41%

5) 2,759,779,250원 × 41% = 1,131,835,989원